(재)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6-115호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026년 제9차 소속시설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소속시설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20일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Ⅰ 채용개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직위	채용인원	고용형태	직무내용	비고
합계		17명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지원팀장	1명	정규직	◦가족돌봄지원팀 총괄, 대상자 사례관리 총괄·관리 및 종결승인 등 ◦지원 대상자 중 주요 사례관리자 지정, 사례관리 회의 운영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점검 및 결과 확인 ◦지역 내 자원 연계, 발굴 시스템 구축 ◦지역 내 학교, 병원 등 유관기관 및 협력 대상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담당자와 정보공유 소통경로 구축 업무 총괄 * 지역 내 사례관리 사업 수행중인 공공·민간기관, 교육청, 교육기관, 고용센터 등	
	고립은둔지원팀장	1명	정규직	◦고립은둔지원팀 총괄, 대상자 사례관리 총괄·관리 및 종결승인 등 ◦지원 대상자 중 주요 사례관리자 지정, 사례관리 회의 운영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점검 및 결과 확인 ◦지역 내 자원 연계, 발굴 시스템 구축 ◦지역 내 학교, 병원 등 유관기관 및 협력 대상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담당자와 정보공유 소통경로 구축 업무 총괄 * 지역 내 사례관리 사업 수행중인 공공·민간기관, 교육청, 교육기관, 고용센터 등	

	가족돌봄지원팀원	5명	정규직	◦ 가족돌봄청년지원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참여자 발굴체계 구축 ◦ 참여자 발굴 및 선정, 초기상담 ◦ 사례관리(계획, 자기돌봄비 지원, 각종 서비스 연계) ◦ 대상자 사후관리 업무수행	
	고립은둔지원팀원	6명	정규직	◦ 고립은둔청년지원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온라인 발굴체계 구축 ◦ 참여자 발굴 및 선정, 초기상담 ◦ 사례관리(온라인상담 및 방문상담, 참여자 판정, 지원계획 수립,프로그램 지원) ◦ 대상자 사후관리 업무수행	
	행정전담팀원	1명	정규직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사업예산 및 집행 관리(e나라도움, 희망이음) ◦ 예결산 관리, 통장관리 및 카드 사용 관리 ◦ 회계·세무 업무, 인사서류 및 복무관리, 각종 문서기록물 관리 ◦ 물품·시설물 관리 등 기본재산·계약 관리 (사회적약자 생산품 구매 등)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	주임 (육아휴직대체)	1명	계약직	◦ 회계 및 예결산 등 관리(지출・출납 관리) ◦ 서무 및 원천징수 업무 ◦ 사무・행정 업무 ◦ 지역사회 연계 및 돌봄서비스 사업 등	
	긴급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1명	계약직	◦ 서비스 안내, 상담, 현장방문 및 제공기관 연계 ◦ 사업 운영・평가 및 실적관리 ◦ 돌봄제공기관 모니터링 등 관리 ◦ 행정 및 회계 처리 업무 등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동부돌봄센터	주임	1명	계약직	◦ 회계 및 예결산 등 관리(지출・출납 관리) ◦ 서무 및 원천징수 업무 ◦ 사무・행정 업무 ◦ 지역사회 연계 및 돌봄서비스 사업 등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2. 근로조건

구분	채용직위	근무기간	보수기준	근무형태	근무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지원팀장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기본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이용시설 선임사회복지사 기준) ·명절수당: 연2회(기본급 60%씩) ·가족수당(공무원기준)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고립은둔지원팀장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기본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이용시설 선임사회복지사 기준) ·명절수당: 연2회(기본급 60%씩) ·가족수당(공무원기준)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가족돌봄지원팀원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기본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이용시설 사회복지사 기준) ·명절수당: 연2회(기본급 60%씩) ·가족수당(공무원기준)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고립은둔지원팀원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기본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이용시설 사회복지사 기준) ·명절수당: 연2회(기본급 60%씩) ·가족수당(공무원기준)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행정전담팀원	임용일~정년 (수습평가 후 정규직 임용)	·기본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이용시설 사회복지사 기준) ·명절수당: 연2회(기본급 60%씩) ·가족수당(공무원기준)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	주임 (육아휴직대체)	임용일~'28. 1. 16. (육아휴직 복직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기본연봉: 25백만원~47백만원 ·부가급여 별도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긴급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임용일~'27. 12. 31. (근로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기준)	주 5일 (주 40시간)	전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동부돌봄센터	주임	임용일~'27. 6. 30. (근로종료 후 근로계약 종료)	·기본연봉: 25백만원~47백만원 ·부가급여 별도	주 5일 (주 40시간)	장수

※ 공통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위탁사업, 계속사업 종료 시 근로관계 종료(정규직 포함)

※ 전북인동부돌봄센터: 업무 여건에 따라 전북인돌봄센터(전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전북인(동부)돌봄센터 주임의 보수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열린경영-제규정(보수규정)에서 확인 가능함

Ⅱ 응시 자격요건

1. 공통요건

※ 공통요건, 응시자격기준, 가점사항은 공고일 전일 기준임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거 주 지 : 공고일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결격사유 : 채용분야별 다음 결격사유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분	채용직위	결격사유
공통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지원팀장, 고립은둔지원팀장, 가족돌봄지원팀원, 고립은둔지원팀원, 행정전담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전담 기관 인사 규정에 따른 사유 적용(결격사유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	주임(육아휴직대체), 긴급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동부돌봄센터	주임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2. 응시자격 기준

구분	채용직위	자격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지원팀장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 취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 또는 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고립은둔지원팀장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 취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 또는 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가족돌봄지원팀원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5.「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6.「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장애인재활상담사
	고립은둔지원팀원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5.「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6.「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장애인재활상담사
	행정전담팀원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5.「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6.「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장애인재활상담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돌봄센터	주임 (육아휴직대체)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9급 또는 9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유관 단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유관단체)「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정대상경력 기관 - 단,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중 유사경력의 '가목·고목·소목·초목'은 제외 ※ (해당분야) 사회복지, 문화*, 체육 관련 학위 * 문화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관련 학위
	긴급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o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 분야)「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경력인정 범위의 인정 대상 경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인동부돌봄센터	주임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9급 또는 9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유관 단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유관단체)「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정대상경력 기관 - 단,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중 유사경력의 '가목·고목·소목·초목'은 제외 ※ (해당분야) 사회복지, 문화*, 체육 관련 학위 * 문화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관련 학위

3. 가점사항

구분	요건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만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만점의 5%

* 가점사항은 면접시험에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산점 적용

Ⅲ 채용일정 및 세부사항

1.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6. 11. 20.(금)~12. 10.(목)	o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청, 클린아이 등
응시원서 접수	12. 4.(금)~12. 11.(금)	o 채용사이트에서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12. 18.(금)	o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면접시험	12. 22.(화)~12. 23.(수)	o 장소 : 전주
최종합격자 발표	12. 28.(월)	o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임용예정자 등록	12. 29.(화)~12. 31.(목)	o 사회서비스원
임용	'27. 1. 1.(금)	o 임용 시 근무일 변경 불가

※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합격자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변동 가능

2. 세부사항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 12. 4.(금) ~ 12. 11.(금), 18:00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jeonbuk-pass)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직무수행계획서는 청년미래센터의 '가족돌봄지원팀장, 고립은둔지원팀장'만 작성

- 유의사항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 자격기준 중 필수사항(경력, 자격증, 학위 등)은 지원서에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적격 여부 확인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서류심사

- 심사대상 : 지원서 접수자 전원
- 합격인원 : 합격기준 적합자 전원
- 합격기준
  - 자격기준 부합 여부 및 제출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 미비, 지원서 등 작성 내용이 현저히 불성실한 응시자는 서류 부적격 처리
- 유의사항
  - 서류심사는 증빙서류 없이 지원서에 기재사항으로 심사하고, 추후 면접시험 시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기재 및 기재 착오 등이 있을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시험

- 시험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예비합격자명단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부여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진행방법 : 면접위원별 블라인드 질의응답식 심층면접
- 합격기준
  · 공적 책무성·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 여부, 이해력 및 지식수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인성과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심사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결정(면접위원 합계 평균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할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함)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면접점수 우선 항목별 고득점 순
(① 공적 책무성·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 여부,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 창의성 및 전문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인성과 직업관)

- 제출서류
  · 면접시험 당일 유효기간 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면접 시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비고	발급기간
공통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초본으로 확인이 불가 시 병적증명서 제출)	공고일 이후
해당자	자격증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기간 무관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지 폐업 등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단, 폐업 사실증명 제출(세무서 발급 가능) *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교육이수	교육이수 증빙(교육이수가 응시 자격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전
	재직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공고일 이후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공고일 이후

○ 유의사항

- 접수 시 공고내용 미확인,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미기재, 지원서 형식 미사용, 연락불능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 불가
- 응시자는 접수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분야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없는 경우 포함) 등에는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출 필요
- 채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안내문을 참조하여 해당 양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063-906-403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통요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